

자기 권리 알기: 뉴욕시 학생 대상

뉴욕시에서 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 근무자, 방문자와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정, 일자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

뉴욕시 학생은 주택 공급 과정, 일자리, 학교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나이, 이민자 신분, 장애 또는 기타 보호 대상 클래스에 기반하여 차별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는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괴롭힘

뉴욕시에서 차별적 괴롭힘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차별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욕시에 차별적으로 괴롭히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괴롭힘은 한 사람의 시민 평등권 또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협, 협박, 강요, 폭력을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합니다.

- 해당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신분, 기타 보호 신분이 부분적으로 원인이 됨
- 해당인 또는 재산에 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함 또는 해를 끼침
-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가 자행함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 신고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신분 때문에 위협받거나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212-416-0197로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전화하십시오. 위원회는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귀하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며,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무료로 사건을 조사할 것입니다.

추가 자원

- 인종, 민족성, 종교 등 신분 때문에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 범죄 피해자 보호 단체에 연락하여 범죄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후유증을 해결하고 기타 선택권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1-866-689-HELP (4357) TDD: 866-604-5350으로 모든 범죄 상담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